

노루알앤씨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정책

1. 총칙

1. 목적

본 정책은 노루알앤씨의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조달을 보장하고 고객사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법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탄소배출, 폐기물, 자원소비 등)과 사회적 영향(근로시간, 임금, 인권 등), ESG 리스크를 식별·관리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 관리체계,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2. 적용 범위

본 정책은 노루알앤씨 전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하도급업체, 유통업체 직원, 지역사회 및 주민, 국가기관 소속 직원 등 노루알앤씨가 사업을 영위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3. 역할 및 책임

노루알앤씨는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통해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 및 성과개선 활동 전반을 감독한다. ESG 위원회는 본 정책을 승인하고, 정책 개정, 공급망(구매·조달)분야 법률 및 규제 대응, 추진성과 등을 검토·심의한다.

4. 정량적 목표 (기준연도 : 2024년)

노루알앤씨는 본 정책에 따라 다음 목표를 설정한다.

1) 2030년까지 주요 협력업체 ESG경영 협력사 평가 비율을 50%로 확대한다.

: 2024년에는 매출 상위 협력사 10개 진행

2) 2030년까지 제품 중 친환경제품* 사용비율(사용량)을 80%로 확대한다.

* 이 정책에서 사용하는 친환경제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탄소제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효율표시 1~2등급 제품

-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하는 HB(Healthy Building Material) 마크 제품
 - 상기 외 공공기관에서 신규 도입한 인증 및 해당 인증제품
 - 당사에서 자체 정립한 인증체계와 기준 상 친환경제품에 해당되는 제품
 - 물 (CAS#7732-18-5) 함유량이 10% 이상인 제품
- 3) 2027년까지 생산기획팀 직원의 90%가 환경·사회·지속가능성 관련 교육을 이수한다.
- 4) 2030년까지 공급망 탄소배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협력업체의 탄소배출 데이터 수집률 80% 달성한다.
- 5) 2030년까지 협력업체 100%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ILO 핵심 협약(아동·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5. 검토 주기

노루알앤씨는 국내 법령과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 정책을 최소 연 1회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내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경영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6. 공급망 실사

6.1 전담 조직

노루알앤씨 생산기획팀은 매년 협력사의 인권, 노동, 환경, 안전, 윤리 및 거래관계 등에 대한 실사를 총괄 진행한다.

6.2 실사 프로세스

노루알앤씨는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위험을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해 아래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이행한다.

7. 상담 및 제보절차

공급망 관련 고충 및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처리하기 위해 협력사 임직원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과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 내부 접수창구: 고충 처리함
- 통합 고충처리 제보 사이트: 신문고 제도(kmlee@noroo.com), 통합 신고 채널(홈페이지 게시)

II. 운영지침

1. 규정 준수, 구매 윤리

- 1.1 국내법규와 노루알앤씨 자사 규정을 준수하여 구매 업무를 실행한다.
- 1.2 구매 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와 수립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1.3 구매를 통해 얻은 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1.4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구매를 수행한다.

2. 구매 원칙

- 2.1 거래 가격은 공정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2.2 협력업체와 공급업체는 품질, 납기, 가격 및 노동/인권 정책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이행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선정된다.
- 2.3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 2.4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비용 절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구매 업무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실행

- 3.1 원자재 구매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 보증, 품질에 대한 그룹 공유 정책 및 기타 모든 관련 표준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3.2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원자재는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탄소배출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다.

4. 협력업체 및 계약업체에 대한 요청

- 4.1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가 노루알앤씨 조달 정책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 4.2 안전, 환경, 품질기준 및 법규를 준수하고 인권, 노동, 윤리경영 및 정보보안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및 지속가능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노루알앤씨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Ⅲ. 협력사 행동규범

1. 인권 및 노동(LABOR & HUMAN RIGHTS)

1.1 강제 근로 금지

협력사는 법적요건을 준수하여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공식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모든 근로는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근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의지를 존중하여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퇴사하도록 하거나, 질병, 일시적 장애 등의 경우에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및 인력 알선 업체, 하청업체)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과 등과 신분 관련 문서를 보관, 파기, 은닉, 압수할 수 없으며, 취업의 일환으로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1.2 아동 노동 금지

협력사는 만 15세(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다면 이들을 위험한 작업 또는 연장 및 야간 근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1.3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비상 또는 특수 상황을 포함한 현지 법규에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근로자에게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최저 임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급여, 급여 공제를 포함한 보상제도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준수해야 한다.

1.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언어/육체/정신적 폭력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6 차별 금지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제공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혼인 여부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1.7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 존중

현지 법규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근로자 대표가 근무 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등 위협이나 괴롭힘에 대

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2. 인권 및 노동(LABOR & HUMAN RIGHTS)

2.1 산업 안전

협력사는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한 후,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통제하기 위해 공정 설계, 기술/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절차 구축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2.2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4 유해인자 노출 방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유해인자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2.5 신체 부담 업무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가 장시간의 반복적 수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평가하고, 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개선, 직무 순환, 스트레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6 설비 안전 관리

협력사는 작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련 절차서 또는 지침서를 개정하고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7 위생 및 주거 시설 제공

협력사는 작업장, 위생 관련 장소, 주거 시설 등 근로자의 소재와 관련된 모든 장소와 시설을 보건안전 리스크 및 오염 리스크가 없도록 제공해야 한다.

2.8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운영 기준을 비롯한 안전 관련 정보는 근

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3. 환경(ENVIRONMENTAL)

3.1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 인허가 및 보고 요건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해야 한다.

3.2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협력사는 생산 프로세스 개선, 설비 공정의 변경, 원료 대체, 자재 재활용/재사용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 등을 통해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

3.3 유해 물질 관리

협력사는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른 라벨링 등을 통한 표기 및 별도 관리되어야 한다.

3.4 폐기물과 폐수 관리

협력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관리/처리 후 배출/폐기해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 대기오염 관리

협력사는 공정상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및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현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3.6 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협력사는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7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적용하여야 한다.

4. 책임 있는 광물 관리(RESPONSIBLE SOURCING MINERALS)

4.1 비윤리적 광물 사용 금지

인권 유린,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험, 오염 등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비윤리

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관련 광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관련 광물'은 분쟁광물, 분쟁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하는 광물과 원재료를 의미한다.

5. 윤리경영(ETHICS)

5.1 윤리경영 준수

협력사는 노루알앤씨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금지하고 반부패 법규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5.2 정보 공개

협력사는 모든 업무 및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여야 하며, 이를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노동, 인권, 안전보건, 환경 관리, 경영활동, 재무현황 및 성과 정보를 관련 법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5.3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밀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

5.4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5.5 기업정보 보호

협력사는 업무 중 알게 되는 영업정보, 기술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및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6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6.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6.1 경영진 준수 의지 표명

협력사는 본 규범에 대한 경영진의 준수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의지를 문서로 표현하여 사업장에 현지어로 게시해야 하며, 경영진은 행동규범의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6.2 법규 및 고객 요구 사항 대응

협력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법률, 규정,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6.3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사는 환경, 안전, 노동, 준법, 인권, 윤리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한 뒤, 이를 통제, 관리하여야 한다.

6.4 목표 수립 및 관리

협력사는 환경적, 사회적 성과 및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5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사는 본 규범과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 등에 대해 근로자, 협력사, 고객과 소통해야 한다.

6.6 임직원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협력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행동규범의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6.7 감사 및 평가

협력사는 본 규범의 내용 및 고객 요구 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6.8 개선 프로세스 운영

협력사는 본 규범에 위반되는 사항과 평가 및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적시에 시정하여야 한다.

6.9 문서화 및 기록

협력사는 문서와 기록의 작성, 유지에 있어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6.10 공급망 책임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본 규범을 통해 노루알앤씨가 지향하는 윤리/환경/사회적 기업경영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 (이하 "당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노루알앤씨(이하 "귀사"라 한다.)와 거래함에 있어 귀사의 ESG 행동규범 실천에 적극 협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본인은 귀사의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본 행동규범")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성실히 동참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 행동규범 준수

- 당사는 본 행동규범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귀사와의 거래에서 본 규범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당사는 본 행동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귀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거래 물량 제한, 거래 중단 또는 종료 등의 조치에 동의한다.

제2조 조사 등의 협조 의무

- 당사는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한 자가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현장 방문,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활동·지식재산권 등 권리가 침해되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예외적 상황 발생 시에는 사전에 귀사에 설명하고 서면 승인을 받겠습니다.
- 당사는 귀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시설, 자료, 인원 접근을 제공하고 협조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행동규범 위반 시 이를 즉시 귀사에 통지하고, 시정을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며, 위반 및 조치 사항을 문서로 기록해 귀사가 요청한 기간 동안 보관하겠습니다.
- 당사는 협력사에도 본 행동규범을 제공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며, 협력사가 위반할 경우 지체 없이 귀사에 통지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제3조 기타

- 당사는 본 행동규범이 귀사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 당사는 귀사와 체결한 계약과 본 행동규범 간 불일치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본 행동규범이 우선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 월 00 일

회 사 명 : []
주 소 : []
사업자번호 : []
대 표 자 : [] (인)